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73
----------	-----

2018. 1. 31.(수)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김양희 의원 등 6인

나. 발의일자: 2018년 1월 9일

다. 회부일자: 2018년 1월 12일

라. 상정일자: 2018년 1월 19일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양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기관과 학교에 설치된 체육관(강당) 및 운동장에 대해 1개월 이상 장기 사용시 사용료를 인하여, 징수액 편차를 해소함으로써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에 관한 별표의 금액 중 일부 인하
(안 제22조제2항)
- 2) 장기사용 시 재산 관리관이 별도로 정하는 것을 별표에 정한 사용료
징수로 명시(안 제22조제5항)
- 3) 사용료 감면조항 삭제(안 제22조제6항)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광주)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체육관(강당) 및 운동장의 1개월 이상 장기사용료를 50% 인하하고,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징수하는 것을 통일하여 학교별 징수액 편차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지역주민들의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의 별표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중 1개월 이상 장기사용료를 인하하고, 냉·난방기 가동 시 20% 범위 내에서 가산 징수한다.

제22조 제5항의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 제6항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⑤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u>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u></p> <p>⑥(생 략)</p> <p>1.(생 략)</p> <p>2. <u>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기타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써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⑤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u>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⑥(현행과 같음)</p> <p>1.(현행과 같음)</p> <p>2. <u>〈삭 제〉</u></p>
<p>[별표]</p> <p><u>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u></p>	<p>[별표]</p> <p><u>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u></p>

현행						개정안						
지역별	시설별	기준			비고	지역별	시설별	기준			비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 지역	보통교실		5,000원	10,000원	15,000원	1실당	보통교실(1실당)		5,000원	10,000원	15,000원	냉·난방 가동시 20% 범 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수 용가능 인원범 위내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시간당 2,500원	
		1개월이상 수시사용	시간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2,500원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수 용가능 인원범 위내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삭제		
	1개월이상 수시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군 지역 (읍 면 포함)	보통교실		2,500원	5,000원	10,000원	1실당	보통교실(1실당)		2,500원	5,000원	10,000원	냉·난방 가동시 20% 범 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 용가능 인원범 위내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시간당 1,500원	
		1개월이상 수시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운동장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 용가능 인원범 위내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삭제		
	1개월이상 수시사용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000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2조(사용·수익허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